

성능기준화의 움직임과 보험

정 광 제

위험관리정보센터 정보서비스팀장

1. 머리말

최근 수년간 보험업계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요율산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98년 7월부터 손해보험 기간종목의 요율산출이 「사양기준」에서 이른바 「성능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보험금액에 곱하여 보험료를 내는 계수를 요율이라 하는데, 요율은 화재와 상해보험요율을 주로 산출하는 손해보험요율산정회와 자동차보험요율을 주로 산출하는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이 둘을 합쳐 산정회라 한다)의 두 단체가 산정하여 대장성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회사가 사용한다. 그러나, 98년 7월 1일을 기해 산정회 요율의 준수 의무가 폐지되고 보험회사가 대장성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독자적인 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산정회의 요율표에 기초, 건물의 화재보험이면 소재지와 구조로 규정되는 「기본요율」에 소정의 할증·할인을 하여 적용요율을 산출하였다. 그 프로세스는 정해진 「사양」에 따르는 것으로서 건물(소유자, 관리자를 포함)이 가지는 그 외의 「성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불에 탄 호텔 뉴 저팬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자. 만일, 호텔 뉴 저팬과 같은 입지·규모·내장재 사양·소화설비가 있는 호텔이 요코하마시에 있다면, 뉴 저팬과는 화기관리, 소화설비의 점검·유지관리, 경영자·종업원의 방화의식, 훈련 등이 확연히 다르더라도 현행으로는 같은 요율이 적용

되는 것이다.

정해진 대로밖에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산출방법이 98년 7월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독자 프로세스로 요율을 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화재보험에 있어 각자의 눈으로 건물을 보고 판단하여 각 사의 매뉴얼에 따라 리스크의 실태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상이 98년 7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보험업계의 변화 가운데 요율산출 구조가 이른바 「사양기준」에서 「성능기준」 기초로 바뀌는 것에 대한 예상이다.

2. 건물구조, 부자재, 재료 등의 성능 기준화가 화재보험에 미치는 영향

건축기준법의 「성능기준화」로 화재보험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현재의 화재보험은 <표>와 같이 6가지 종류와 화재·폭발·낙뢰 외에 풍수해 등 광범위한 담보범위가 있어 복잡하므로 알기 쉽게 「화재사고」에 관한 영향만을 서술한다.

우선, 화재보험의 구조를 생각해보자.

가. 화재보험요율 산출의 구조

건물의 종류는 다양하고, 기능도 여러 가지이다. 보험용어로 대상건물을 「물건」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오피스, 호텔, 병원, 백화점 등은 일반

〈표〉 화재보험의 종류와 주된 담보범위

구 분	공장물건	일반물건	주택물건	주택종합보험	점포 종합	단지 보험
화재	○	○	○	○	○	○
낙뢰	○	○	○	○	○	○
파열·폭발	○	○	○	○	○	○
외래물의 낙하·충돌	차량 항공기로 20만엔 이상	×	×	○	○	3000엔 공제
급배수설비에서의 수손	○	×	×	○	○	"
소요 등	20만엔 이상	×	×	○	○	○
도난 등	×	×	×	○	○	○
풍설해	손해액 20만엔 이상					3000엔 공제
수 재	×	×	×	손율 30% 이상 70% 축소		×

물건이라 한다. 일반물건은, ① 건물구조·지구에 따라 기본요율이 정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② 층수·용도의 할증을 더하며, ③ 소화설비 할인을 하여 적용요율이 산출된다.

건물구조는 구조 급별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데, 건축법규상의 「내화」, 「준내화」, 「방화구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법규의 변천에 따라 간이내화라는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준내화가 되는 등의 변경은 있으나, 요율서가 「내화」, 「준내화」 등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화재보험 체결시에 요율서를 보는 사람(일반적으로 대리점)이 반드시 건축 전문가는 아니므로 알기 쉬운 표현이면서도 대표적인 구조를 열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가장 낮은 요율로 적용되는 특급구조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중 기둥, 보, 바닥, 지붕 및 지붕틀이 콘크리트조로, 외벽 모두가 ① 콘크리트조 ② 콘크리트 블럭조 ③ 벽돌조 ④ 석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이라 규정되어 있다. 요율서는 건축에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식별 가능할 것을 고려하여 이렇게 열거식으로 사양이 규정되어 있다(단, 가장 최근의 요율 개정(1995년)에서는 구조규정이 개정되어 법규에 가급적 적합하도록 개선되었다).

나. 성능기준화의 영향

「성능기준화」가 진행되면, 공법, 부자재, 재료가 다양해진다. 성능항목으로는,

- 지진, 강풍, 적설에 대한 구조 안전성
- 화재에 대한 안전성
- 피난에 대한 안전성
- 환경, 위생상의 안전성

등 4가지 분야가 있는데, 화재보험의 담보범위 중에서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에 대해서는 「성능기준화」가 건물의 방화성능과 구조의 구분에 귀결된다.

화재보험에 대한 성능규정화의 주된 영향

성능기준화 → 건물의 방화성능에 대한 판정
→ 건물구조의 구분에 대한 판정

화재보험요율은 화재리스크에 따른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社費 등)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능기준화」는 순화재보험요율의 원래 산출식인 도시화재위험도측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재위험도를 하나의 건물에 응용한 계산식

$$r = f \cdot a / A \cdot d$$

f : 발화율, a : 1발화 당 연소면적,
A : 건물전체의 면적, d : 손상률

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 발 화 율 : 소재지, 건물용도, 주변 상황 등
- 연소면적 : 주요구조, 방화구획, 내장재, 가연물 양, 위험물의 유무·양, 사설소화설비, 공설 소방력 등
- 손 상 륜 : 주요구조, 수용동선의 종류 등

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발화율, 연소 면적, 손상률을 위해서는 특히 연소면적이 방화성능, 건물구조의 구분(주요구조)과 관련된다.

3. 성능기준화의 과제

가. 건물을 방화성능으로 판정

성능기준이 소방법 규정에까지 미칠 경우에는 새로운 소화설비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이 필요해 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방화구획, 내장재가 기준법 이상의 성능으로 설계 시공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성능을 새로운 기준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준비, 보험계약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나. 건물구조의 구분에 대한 판정

법이 성능기준화하더라도 건축구조의 「내화건축물」, 「준내화건축물」 등의 구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부자재, 재료의 수준에서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건물의 주요구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① 내화건축물 ② 준내화건축물 ③ 방화구조 건물 ④ 기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

우 해결해야만 할 과제가 있다. 예를 들어,

- 내화건축물과 준내화건축물의 분별법
- 내화건축물에 그 이외 구조의 건물이 접속해 있는 경우의 효율적용방법
- 건물의 일부분에만 구조적으로 하위의 구조가 있는 경우의 효율적용방법

등이다. 그것을 어떻게 결정,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능」으로 측정할지는 앞으로 각 보험회사의 독자성이 발휘될 부분이라 할 것이다.

4. 맺는 말

미국에서는 각 보험회사가 독자적인 효율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있는데 건물구조, 위험물의 종류·양, 또는 소화설비 등을 정보원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다. 일본과 다른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최대예상손해액(PML, MFL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가지 인수조건, 출재액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수집·손해방지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모두에 기술한 것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기준에 의거하여 거의 일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미국처럼 각 보험회사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대상건물의 방화성능을 측정, 독자적인 효율을 산출하는 시대가 될 것임에 틀림없고, 그 경우 어느 정도 기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건축기준법의 성능기준화는 손보업계에 있어 지금보다 더욱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火災”지 98년 2월호에 실린 글로서, 세계적인 추세인 효율 자유화와 성능기준화에 따라 우리 보험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번역, 게재합니다.)